KAIST 학생문화공간위원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KAIST 학생문화공간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장영신 학생회관(이하 '신학생회관'이라 한다)을 비롯한 KAIST 교내 학생 문화 공간의 총체적인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진정한 학생 공간을 위하여 공간에 대한 학생의 권리 보장과 학생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 본회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내 학생 문화 공간에 대한 학생 권리 보장
- 2. 신학생회관의 일상적인 관리 및 운영
- 3. 신학생회관 내 학생 문화 활동 지원
- 4. 교내 학생 문화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제4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총회
- ② 전체회의
- ③ 팀장회의
- ④ 팀 회의
- ⑤ 기타회의

제2장 위원

제5조 (위원)

본회의 위원은 본회에서 실시한 리크루팅을 통해 선발한 자로 한다.

제6조 (선발)

- ① 본회의 위원 선발 방식에는 정기 리크루팅과 특별 리크루팅이 있다.
- ② 본회의 정기 리크루팅은 매년 봄학기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지원자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선발한다.
- ③ 본회의 특별 리크루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지원자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선발한다.
 - 1. 전체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2. 본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가 팀장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 받은 경우

제7조 (제명) 다음 각 항의 경우에 본회 위원의 제명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① 본회의 상근에 합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불참한 경우
- ② 본회의 전체회의에 합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불참한 경우
- ③ 본회를 악용하거나 본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을 경우

제8조 (활동학기)

- ① '활동학기'란 본회의 위원으로서 의무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을 말한다.
- ② 활동학기는 본회의 위원으로 들어온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해 가을학기 종강까지로 한다.
- ③ 위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활동학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구분)

- ① 본회의 위원은 활동위원, 특별위원, 명예위원으로 구분한다.
- ② 본회의 활동위원은 활동학기 중인 위원으로 한다.
- ③ 본회의 특별위원은 활동학기를 끝까지 이행한 위원 중 본교에 재적 중인 학생으로 한다.
- ④ 본회의 명예위원은 활동학기를 끝까지 이행한 위원 중 특별위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 ⑤ 단, 졸업 등의 특별한 사유로 활동학기를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위원이나 명예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활동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
 - 2. 본회의 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
 - 3.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 4. 본회의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
- ② 본회의 특별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회의 총회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
 - 2. 본회의 활동위원의 교육을 지원할 권리와 의무
 - 3.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제3장 총회

제11조 (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심의의결기구이다.

제12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활동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3조 (의장)

- ①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본회의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재 시에는 본회의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활동위원이나 특별위원 중 1인을 의장으로 한다.

제14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① 정기총회는 매년 학사일정에 따른 겨울방학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본회의 활동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역할)

- ① 본회의 존립 및 위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②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제16조 (의결)

- ① 본회의 활동위원 2/3 이상의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기권 표 수가 재석 인원의 1/4 이상인 경우 의결을 무효화하고 재의결을 실시한다.

제4장 전체회의

제17조 (지위)

전체회의는 본회의 상설적인 최고심의의결기구이다.

제18조 (구성)

전체회의는 본회의 활동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9조 (의장)

- ① 전체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활동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재 시에는 본회의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활동위원이나 특별위원 중 1인을 의장으로 한다.

제20조 (소집)

① 전체회의는 정규 학기 동안 매주 1회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단, 위원장의 재량으로 소집을 연기하거나,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활동위원 1/3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역할)

- ① 팀장회의에서 전체회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 ② 본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논의한다.
- ③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1. 본회의 위원장 선출
 - 2. 회칙 개정안 발의 및 의결
 - 3. 본회의 위원 선발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4. 본회의 위원 제명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5. 본회의 위원장단 탄핵 의결
 - 6. 본회의 팀 구성 및 개편
 - 7. 본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결
 - 8. 본회의 회칙에서 정한 전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
 - 9. 기타 본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팀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

제22조 (의결)

- ① 본회의 활동위원 2/3 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기권 표 수가 재석 인원의 1/4 이상인 경우 의결을 무효화하고 재의결을 실시한다.

제5장 팀장 회의

제23조 (지위)

팀장회의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전체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24조 (구성)

팀장회의는 본회의 팀장, 위원장단으로 구성된다.

제25조 (의장)

- ① 팀장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팀장단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26조 (소집)

- ① 팀장회의는 정규 학기 동안 의장의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단, 의장의 재량 하에 연기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 (역할)

- ① 각 팀의 1주 간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 ② 본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 ③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심사한다.

제6장 팀 회의

제28조 (지위)

팀 회의는 각 팀이 담당하는 공간 또는 분야에 대해 실무적인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이다.

제29조 (구성)

팀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팀의 구성원으로 결정된 활동위원들로 구성된다.

제30조 (의장)

- ① 팀 회의의 의장은 각 팀의 팀장으로 한다.
- ② 팀장 부재시 전체회의 의장이 팀 회의의 의장을 겸직한다.

제31조 (소집)

- ① 팀 회의는 정규학기 동안 의장의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단, 의장의 재량 하에 연기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 (역할)

- ① 팀이 담당하는 공간 또는 분야의 활동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 ② 팀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심사한다.

제7장 기타회의

제33조 (지위 및 구성)

- ① 기타회의는 본회의 원활한 실무 진행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열리는 심의기구이다.
- ② 총회, 전체회의, 팀장회의, 팀 회의를 제외한 본회의 회의는 기타회의로 정한다.
- ③ TF(Task force)를 제외한 모든 기타회의는 본회의 활동위원으로 구성된다.
- ④ 단, 교육 지원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34조 (역할)

본회의 실무에 관하여 논의한다.

제35조 (TF)

- ① 특정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담당자가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회의 또는 팀장회의의 의결을 통해 TF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TF는 모든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을 대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기타 TF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사업의 담당자가 정한 후 전체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8장 위원장단

제36조 (지위)

- ①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궐위 시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37조 (임기)

- ① 위원장의 임기는 당선 이후의 총회 익일부터 다음 해 총회까지로 한다.
- ② 전임 위원장의 궐위 시 남은 임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1. 임기가 정규학기 기준 1학기 이상 남은 경우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선출된 자의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당해 연도 총회까지로 한다.
 - 2. 임기가 정규학기 기준 1학기 미만 남았고 인수인계 기간 중인 위원장 선출자가 없는 경우 전체회의의 의결을 통해 부위원장을 임시 위원장으로 하고 임시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 총회까지로 한다.
 - 3. 인수인계 기간 중인 위원장 선출자가 있는 경우 선출자는 즉시 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고 임기는 다음 해 총회까지로 한다.
- ③ 부위원장의 궐위 시 출마한 부위원장 후보자를 전체회의에서 활동 위원 2/3이상의 재석, 과반수의 득표를 통해 인준한다.

제38조 (역할)

- 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1. 총회, 전체회의, 팀장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 3. 본회의 대내외 활동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
 - 4. 전체학생총회,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제39조 (선출 및 인수인계)

- ① 위원장의 선출은 11월 첫 전체회의에서 호선으로 이루어지며 후보자는 선출 3일 이전까지 지원사유,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지원서를 활동위원 전체에게 공개해야 한다.
- ② 활동위원 2/3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③ 단선의 경우 제22조에 따라 활동위원 2/3 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선출 직후부터 임기 시작까지의 기간을 인수인계 기간으로 한다.

제40조 (탄핵)

- ① 활동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위원장의 탄핵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의 탄핵안이 상정될 경우 활동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또는 팀장 중 1인을 전체회의의 의장으로 한다.
- ③ 활동위원 2/3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탄핵 의결 시 제22조 제2항을 따르지 않는다.

제9장 조직

제41조 (구성) 본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위원장단
- 2. 팀장 및 팀

제42조 (삭제) <2016.03.31>

제43조 (인사)

본회의 활동위원은 희망하는 팀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제10장 공간의 관리 및 운영

제44조 (권한)

본회는 학교 학생지원팀과 협의 한 '장영신 학생회관 운영 준칙'에 근거하여 장영신 학생회관 및 기타 학생문화공간의 일상적인 관리·운영 권한을 갖는다.

제45조 (배정)

① '배정'이란, 특정 단체가 신학생회관 내 특정 공간을 일정 기간 이상 점유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배정의 시행은 "세칙: 배정 세칙"을 따른다.

제46조 (예약사용신청 및 허가)

- ① '예약사용신청 및 허가'란 제41조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학생회관 내 공용 공간 및 기타 학생문화공간에 대하여 개인 혹은 특정 단체가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예약사용허가의 시행은 "세칙: 공간운영세칙"을 따른다.

제47조 (팀)

- ① 관리팀은 각 공간의 관리 및 운영을 하며 관리팀장은 각 공간의 준 최고 책임자이다.
- ② 관리팀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예약사용 협의
 - 2. 예약사용신청 승인
 - 3. 비품 구매 및 관리
- ③ 관리팀을 제외한 팀들의 역할은 총회에서 결정되었던 바에 따른다.

제48조 (사용의 제한)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간의 사용을 제한한다.

- 1. 정치·종교적인 행사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행위
- 3.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5. 기타 본 회칙이나 세칙에서 정한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49조 (사용허가 및 배정의 취소)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및 배정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본 회칙이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 3.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5. 제48조에서 규정한 제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제50조 (사용허가 제한의 예외) 본회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할 경우 제43조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의 심의를 통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1. KAIST 학부 총학생회 또는 총학생회 산하 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 2. 참석 주체가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인 경우
- 3. 행사의 내용이 KAIST 학생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4. 기타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그 당위성을 인정한 경우

제51조 (공간운영세칙)

공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세칙: 공간운영세칙"을 따른다.

제11장 개정

제52조 (발의)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본회 활동위원 1/2 이상의 발의
- 2. 본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팀장 2인 이상의 발의

제53조 (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체회의 의장이 전체회의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 (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 후 첫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16년 4월 7일부터 적용한다.